

3.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4. 부당비율이 5%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 부당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나) 2차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다)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을 신설하되 부당청구액의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차등화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가중 처분 대상에서 해당 고시를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00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의2제3항”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검토하여야”를 “모두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제5호 및 제9호”를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범위 및 난이도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서 같다)”을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 조에서 “대행기관””을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를 “제4호”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를 “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하여야”를 “제15조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로 한다.

제33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33조의2제4호 중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으로 한다.

별표 6의 수입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를 “제2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수 입 기 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비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무부장관은 소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범위 및 난이도를 검토하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변경 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기술자격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9월 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